

◆ 김승환 팀장(부장급)/경영총괄팀(2009-01-17 02:23:57 AM) 님으로부터 받은 메일의 내용입니다.

현재까지 여러 경로로 취재한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과 중복되는 것도 많으나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범위내에서 신동아의 미네르바 1차 원고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병행해서 기술했습니다.

추가 취재하고 확인할 부분도 일부 있으나 그 내용은 추후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찰의 박대성에 대한 수사 경과 및 내용

1.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특정 개인을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이 아니며 다음 마고라에서 미네르바가 작성한 글 중에서 사법처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글에 대한 조사를 했다.

2. 다음에 압수 수색을 실시해 신상 정보를 확보했고 미네르바의 IP를 추적했으며 그 결과 창천동의 박대성 집에 컴퓨터를 확인했다.

(박대성은 한국통신 인터넷 망을 사용했으며 고정 IP를 사용했습니다. 고정 IP라 함은 인터넷에 물려있는 컴퓨터는 항상 동일한 IP주소값을 부여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신동아의 미네르바와 박대성이 동일한 IP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신동아 미네르바가 작업한 지역과 통신망 사업자만 알더라도 신동아 미네르바의 진술이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신동아 미네르바는 7명이 하나의 고정 IP를 썼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7명이 각자 컴퓨터를 갖고 와서 하나의 인터넷 선에 번갈아가면서 물려서 써야합니다. 또는 그 7명이 사내통신망(LAN)으로 묶여있는 한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어야 합니다. 그도 아니라면 7명이 전부 컴퓨터 전문가여서 외부에서도 자유롭게 고정 IP에 묶여있는 컴퓨터에 원격 접근해 그 컴퓨터를 통해서만 인터넷에 접속했어야 합니다. 이 정도는 대부분 프로그래머 수준이거나 아니면 대단한 파워 유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또 그 고정IP에 묶여있는 컴퓨터가 항상 켜져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미네르바의 글들은 밤, 낮, 아침, 새벽, 오후 가릴 것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24시간 언제나 그 컴퓨터에 눈치안보고 붙어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신동아 미네르바가 주장하는 고정IP가 있는 곳이 이같은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박대성의 컴퓨터안에는 미네르바의 글이 정리된 문서파일이 다수 나왔다.

(오세인 대변인은 전체 게재 글의 수에 비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 상태의 글쓰기를 했다면 많은 내용이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는 남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 가능합니다.)

4. 박대성은 문제가 되는 7월30일과 11월 29일의 글을 포함한 이 시기에 모든 글을 자신이 작성했음을 시인했다. 검찰도 이 시기에 게재된 글의 IP 확인 결과 모든 글이 박대성 컴퓨터에서 게재된 것을 확인했다.

- 이 부분과 관련해 신동아 미네르바의 주장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동아 원고에 따르면 7월 30일 글은 박대성이 아니라 신동아 미네르바가 썼습니다. 이 부분은 검찰 수사결과 및 박대성의 진술과 정면 배치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5. 검찰은 미네르바의 존재와 관련해 명성을 얻은 몇가지 글들...예를 들어 리만브러더스 파산 예측, 서브 프라임 모기지 관련, 환율 폭등 예견 등의 글들 모두도 박대성의 IP로부터 업로드되었음을 확인했다.

6. 검찰은 수사보안상 박대성의 고정 IP를 공개한 적이 없으며 일반 사용자는 박대성의 IP를 확인할 수 없다.

(다음 마고라에 게재된 글의 제목 밑에 게재되는 IP주소는 신동아에 소개된 것처럼 211.178.xxx.189와 같이 전체 4단계(총 12자리 숫자)중에서 3번째 단계의 3자리 숫자를 비공개 상태로 한 것이며 비공개 상태의 3자리 숫자를 다른 사람이 알 수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민간인은 다음의 네트워크 시스템 관리자가 마음먹고 작업을 한참해서 뒤져야 알 수 있는 정도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찰이 확인한 박대성의 IP가 신동아에 게재된 IP주소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편집국 법조팀 협조 아래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 신동아 미네르바의 설명에 대한 의문이 발생합니다. 그 미네르바는 자신이 이같은 IP를 사용했으며 박대성이 자신의 IP를 따라왔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박대성이 했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동아 미네르바는 가려진 xxx 세자리 숫자의 IP주소가 자신의 것이니까 당연히 알고 있을까요? (알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본인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박대성의 가리워진 xxx는 어떻게 알기에 자신의 것과 똑같다고 할까요? 그냥 가리워진 xxx는 무시하고 나머지를 박대성이 따라왔다는 주장인가요?

(IP세탁의 문제 및 실현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현재 디유넷 서비스운영 본부장과 다음 등 포털에서의 웹 게시판 개발 경험이 있는 디유넷 개발자를 통해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박대성이나 신동아 미네르바 수준에서 IP조작을 실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재 잠정 결론입니다.)

7. 검찰은 박대성의 다른 글들에서 정부를 비난하거나 왜곡한 것에 대해 명예 훼손 혐의가 가능한지 검토중에 있다.

## 검찰의 현재까지 입장 및 제언

- 신동아 12월에 게재된 미네르바의 글은 분석, 예측, 의견을 게진한 것이어서 사법적 처리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검찰은 신동아와 진실공방을 벌이고 싶지 않다.

- 신동아측이 검찰에 미네르바의 신원을 제공하거나 수사의뢰를 한다면 사실 관계를 규명해줄 수 있다. (이 부분은 취재원 보호 관점에서 수용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나 검찰 오세인 대변인의 의견입니다. 오세인 대변인은 만일 신동아 미네르바가 다른 사람의 글을 모아서 신동아에 원고를 제공하고 미네르바라고 주장하며 원고료 등을 받았다면 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추가 의문

- 왜 신동아 미네르바는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에 이르기까지 여러차례 신변의 위협을 느껴 인터넷에서 절필 선언을 했으며 신동아 1차 원고에도 그 이후로는 인터넷에 글을 안 썼다고 하는데 오프라인인 신동아에는 비슷한 시기에 원고를 기고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신동아 12월호에서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으며 1차 원고에서도 읽은 기억이 없습니다. 신동아는 미네르바의 원고를 언제 받았으며 그때 미네르바가 신동아에는 무엇때문에 기고를 했다고 설명했나요?

- 처음부터 7명이 공동 작업을 했다면 왜 신동아 미네르바는 12월호 기고문을 보낼때나 아니면 신동아와 당시에 인터뷰 했을 때 그걸 밝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증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해외 체류 경험이 있으며 나이에 대해서는 커멘트하지 않겠다고만 했을까요?

- 이밖에도 1차 원고와 신동아 12월호를 비교해서 읽는다면 (일반 독자들은 안 그러겠지만 현재 이 시간에도 교학사 앞에서 진치고 있는 모든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의 기자들은 그것을 비교 분석 할 것입니다.) "신동아는 어떻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취재해서 12월호에 미네르바 원고를 게재 했던 말인가?" 하는 의문을 무수히 떠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타 관련 정보

박대성 체포와 관련해 국정원이 뒤집혔음. 국정원이 청와대에 "미네르바는 증권사 근무 및 해외 체류 경험이 있고 50대"라고 보고했는데 검찰 수사 결과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한 셈이기 때문.

이에 대해 국정원이 검찰측에 어필을 했으며 국정원이 검찰에 확인과정을 거쳤고 현재 이에 대해서는 국정원도 포기한 분위기. 이것이 최근 국정원장 불신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함.

(이같은 내용에 대해 국정원 관계자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사실이며 보고한 당사자와도 잘 아는 사이인데 그 보고서에는 50대에 해외 경험 등등의 내용은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Kim Seung Hwan (Shean Kim)

Team Leader  
General Management Team  
Dong-A Ilbo

Tel : 82-2-2020-0619  
Fax : 82-2-2020-1179  
Mobile : 82-11-9785-3561  
e-mail : [sheankim@donga.com](mailto:sheankim@donga.com)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신문 東亞日報